"학생이 중심인 대학, 가르침과 배움이 우선인 대학"

상 지 대 학 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제규정 개정 알림

제규정기본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, 개정된 규정 전문은 공포 3일 이후 홈페이지(학교소개→규정/학칙)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. 제규정 개정사항

규정명	개정사유	주요내용
수업관리규정	공결처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	제15조의2(공결처리) 제1항 제10호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처리 기준을 변경함 (월 1일 이내, 학기당 3일 이내 => 학기당 3일 이내)
장학금지급 규정	○장학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비교과 과정연계 장학을 신설하고 시행하지 않는 장학제도는 폐지하려는 것임 ○신설, 폐지, 기준이 변경되는 장학금 중 이중지급금지의 예외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	○ 제5조(종류) – 장학금 신설 ▸평생교육장학금 – 장학금 폐지 ▸교비국가2장학금 ○ 제11조(이중지급금지) ○ 제12조(이중지급금지예외)

붙임 : 제규정 개정안 각 1부. 끝.

기 획 평 가 처 장 직인생략

수신자 : 전체부서.

2/10

담 당 권순진 팀장 채두식 기획평가처장 유기준 부총장 공제욱 총장 정대화

협조자

시 행 기획예산팀-96(2020.02.11) 접수 - (. .)

우 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(우산동) / http://www.sangji.ac.kr]

전화 033-730-0144 전송 033-730-0594 / sjkwon@sangji.ac.kr / 공개

규 정 입 안 서

1. 입안규정

규 정 명	수업관리규정	규정번호	5-0-03
구 분	(제정 · 개정 · 폐지)	입안부서	교육연구처 학사운영팀
입안사유	○ 공결 처리 기준 변경		
주요내용	○ 제15조의 2(공결처리) 제1항 제10호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학기당 3일 이내 단, 시험기간 제외로 변경함		

2. 참고사항

관계법령		관련 상위·하위 제규정	
예산조치	해당없음		
관련부서와의 협의	해당없음		

3. 신·구 조문 대조표

규 정 명	수업관리규정	구 분 : (제정 · 개정 · 폐지)
		입안부서 : 교육연구처 학사운영팀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15조의2(공결처리)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 다만, 4학년 2학기(졸업학기) 취업자, 학생선수(체육특기생 또는 비체육특기생)의 훈련 및 대회출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주를 초과할 수	제15조의2(공결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	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없다. 1.~ 9. (생 략) 10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: 월 1일 이내, 학기당 3일 이내 단, 시험기간 제외 11. ~ 13. (생 략)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(별지 2호 서식)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	1.~ 9. (현행과 같음) 10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: 학기당 3일 이내 단, 시험기간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공결인정에서 제외 11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(별지 2호 서식)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	문구수정 공결사유별 증빙서류 수정
	부칙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

<변경 전・후>

공 결 신 청 서

학부(과)장

결 재	담 당	팀 장	학 장

공 결 자	_____ 대학 _____학부(과)_____전공 ____학년 학번: 성명 : (연락처:)					
공결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일간)					
공결과목	과 목 명	분반	요일	교시	담당교수	비고
공결사유	**수업관리규정 제 15조의 2(공결처리)**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 다만, 4학년 2학기(졸업학기) 취업자,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대회출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주를 초과할 수 없다. 1. 배우자의 사망 ( ) 2.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( ) 3. 자녀, 형제자매, 백숙부모의 사망 ( ) 4. 학생의 입원 또는 치료기간 ( ) 5.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( ) 6.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(교육실습, 현장실습) ( ) 7.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( ) 8. 본인의 결혼 ( ) 9.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 또는 기타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( ) 10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( ) 11. 군 계약학과의 훈련・작전인 경우 ( ) 12. 4학년 2학기(졸업학기) 취업 : ( ) 13. 체육특기생 훈련 및 대회출전 ( ) **- 첨부: 관련 증빙서류 1부(뒷면 참조)**					
위와 같은 사유로 공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						

<공결 신청 절차>

1. 공결 사유 발생 ➡ 2. 공결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➡ 3. 소속 학부(과)장 확인 ➡ 4.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사유발생 전・후 2주이내 제출

<변경 전·후>

<공결사유별 증빙서류>

공 결 사 유	공결인정기간		증빙서류	비고
	변경 전	변경 후		
1. ~ 9. (생 략)	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10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	**월 1일 이내, 학기당 3일 이내 단, 시험 기간 제외**	**학기당 3일 이내, 단, 시험기간 제외**	증빙없음	
11.~ 13. (생 략)	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
규 정 입 안 서

1. 입안규정

규 정 명	장학금지급규정	규정번호	6-0-4
구 분	(제정・**개정**・폐지)	입안부서	학생행복팀
입안사유	○ 현재 미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삭제 ○ 평생교육융합대학 신입생 대상 장학금 신설 ○ 이중지급금지는 교내장학금에 해당되므로 문구 변경		
주요내용	○ 제5조(종류) 39. 교비국가2장학금 삭제 – 미시행 장학제도 삭제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2유형 미지급 시 운영) 44. 평생교육장학금 신설 – 평생교육융합대학 학생 대상 유연학기제(집중학기제) 운영에 따른 장학제도 신설 ○ 제11조(이중지급금지) : 문구수정 – 외부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에 이중지급이 가능하므로 '각종'을 '교내'로 문구수정 ○ 제12조(이중지급금지예외) : 문구수정 – 교비국가2장학 미시행으로 삭제		

2. 참고 사항

관계법령		관련 상위・하위 제규정	
예산조치			
관련부서와의 협의			

3. 신・구 조문 대조표

규정명	**장학금지급규정**	구 분 : (제정・**개정**・폐지)
		입안부서 : 학생행복팀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5조(종류)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장학생 선발준칙으	제5조(종류)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장학생 선발준칙으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로 정한다. 1. ~ 38. (생 략) 39. 교비국가2장학금 40. ~ 43. (생 략) <호 신설> ② (생 략)	로 정한다. 1. ~ 38. (현행과 같음) 39. (호 삭제) 40. ~ 43. (현행과 같음) 44. 평생교육장학금 ② (현행과 같음)	 장학금 폐지 장학금 신설
제11조(이중지급금지)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며 1인이 2종류의 장학금 수혜 자격이 되었을 시는 가장 유리한 것만 적용시킨다.	제11조(이중지급금지) 교내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며 1인이 2종류 이상의 장학금 수혜 자격이 되었을 때는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.	문구수정
제12조(이중지급금지예외) 각종 장학금 중 1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라도 근로장학생, 해외 연수장학생, 취업장려장학생, 학업봉사장학생, ROTC장학생, 특별장학생, 교육역량장학생, 봉사장학생I, II, 활동장려장학생, 포인트장학생, 교비국가2장학생, 상지119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. 단, 봉사장학생Ⅰ, 활동장려장학생, ROTC장학생, 교비국가2장학생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.	제12조(이중지급금지예외) 교내 장학금 중 1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라도 근로장학생, 해외 연수장학생, 취업장려장학생, 학업봉사장학생, ROTC장학생, 특별장학생, 교육역량장학생, 봉사장학생I, II, 활동장려장학생, 포인트장학생, 상지119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. 단, 봉사장학생Ⅰ, 활동장려장학생, ROTC장학생은 등록금 한도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.	문구수정 교비국가2장학 삭제
	부칙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1일부터 적용한다. ②(경과조치) 제5조(종류) 제1항 제44호 평생교육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	